한국어능력시험(TOPIK) -은시자유의사항-

규정 신분증

신분증	일반	대학(원)생	초·중·고등학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0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0	0	고등학생만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0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0	0

- 가. 체류자격 변경 및 비자 연장 신청 등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 공공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한 응시자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증발급 확인서 등을 지참한 경우 응시 가능(단, 확인서에는 반드시 영문 성명,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나.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단, 국내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기능 등이 포함된 학생증에 금융기관명, 성명,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
- 다.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허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 가능

※ 여권을 제외한 모든 규정 신분증은 국내(대한민국)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을 소지하여야 한다.

시험 응시 불가

-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신청한 시험장과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 수험표에 사진이 없거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응시자 정보와 신분증에 명시된 정보가 다를 경우

시험 시간

구 분	교시	영역	입실 완료	시작	종료	시험시간
TOPIK I	1교시	듣기/읽기	09:20 까지	10:00	11:40	100분 (듣기 40분 / 읽기 60분)
TOPIK II	1교시	듣기/쓰기	12:20 까지	13:00	14:50	110분 (듣기 60분 / 쓰기 50분)
	2교시	읽기	15:10 까지	15:20	16:30	70분

- 입실 완료 시간 전까지 시험실에 도착해야 함
- 시험시간 도중 퇴실 불가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으로 중도 퇴실 후, 시험 종료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
- 시험시간 도중 질병 등의 사유로 퇴실 및 재입실 시 복도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TOPIK II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시험장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음

성적 발표

• **회** 차 : 제95회

• 시 험 일: 2024. 7. 14.(일)

성적발표: 2024. 8. 22.(목) 15:00

• 성적확인: www.topik.go.kr

한국어능력시험 문제 무단 배포 금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복제·배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배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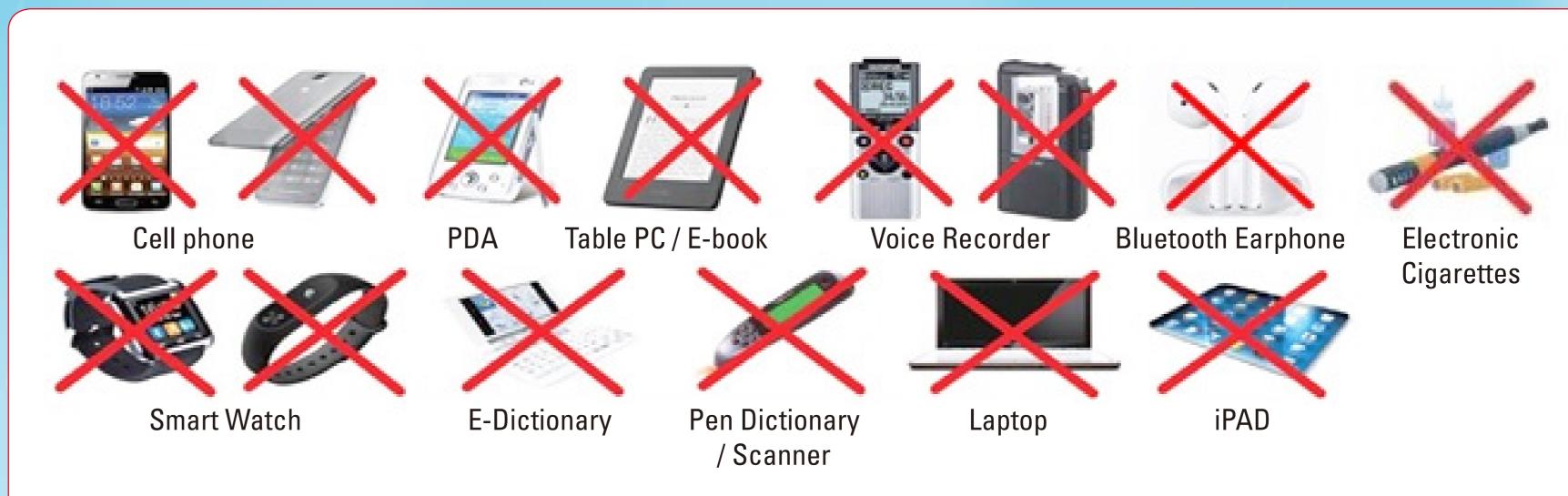






소지 불허 물품

- 응시자는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의 개인물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전자·통신기기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전원을 끈 뒤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실 감독관이 통신기기나 녹음,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할 것을 고지한 이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및「한국어능력시험 기본 운영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조치되며, 1교시 시험 전 감독관에게 소지불허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책임은 응시자본인에게 있습니다.

부정행위 처리 대상

	-1 HI
사례	처 벌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녹음,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관리 중인 경우 제외)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을 적는 행위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문제, 답안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촬영, 음원 녹음, 기타 방법으로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 자세한 내용은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 참고

부정행위 처분 안내

- 부정행위 처분 사전 통지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의 전자우편주소(이메일)로 송달됩니다.
-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 처분 사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은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이메일(topik@korea.kr)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부정행위 처분은 전자문서로 진행되며, 전자문서는 적발된 자의 전자우편주소(이메일)로 송달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하며, 감독관에게 수정테이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듣기평가 종료 후 답안지 작성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으며,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듣기평가 시험 시간에 쓰기 문제를 풀거나 쓰기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등)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

